

대법원 2017. 9. 26 선고 2015다20657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7. 9. 26 선고 2015다206577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15. 1. 28 선고 2014나200284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2. 19 선고 2013가합52665 판결

전 문

원고, 피상고인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

(변경 전 :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)

피고, 상고인 중소기업은행

판결 선고 2017. 9. 26.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. 1. 28. 선고 2014나2002844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1.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

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,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(이하 '이 사건 경매절차'라고 한다)의 2009. 8. 14.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C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, 그 후 C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0. 12. 29. 추가배당기일에서 C에 대한 배당액 400,217,942원(이하 '이 사건 추가배당금'이라고 한다) 중 380,593,202원을 배당받았으나, 피고는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, 이 사건 추가배당금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되어야 하고, 피고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를 경정받음으로써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들과 이 사건 추가배당금을 안분하여 배당받을 경우의 배당금액보다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면, 그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초과부분을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, 다음과 같은 사실, 즉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(이하 '국민은행'이라고 한다)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원심 판시 대여금채권(이하 '이 사건 대여금 채권'이라고 한다)에 대하여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, ② 케이비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추가배당금 배당일인 2010. 12. 29.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면, 국민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자의 지위에 있었고, 국민은행이 2009. 6. 26. 케이비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케이비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위 채권의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않는 한 집행법원으로서 국민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한 배당액을 지급(공탁)하여야 하며, 케이비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국민은행의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었으므로, 결국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한 배당액은 종국적으로 케이비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,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배당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음으로써 발생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의 위

배당액 중 국민은행에 안분될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.

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.

2.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

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,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를 경정받음으로써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들과 추가배당금을 안분하여 배당받을 경우의 배당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어느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 그 초과부분을 다른 가압류 배당요구채권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, 배당이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변제 또는 초과변제 받는 결과가 되지 않는 한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배당금에 대한 안분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.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박보영

대법관김창석

주심대법관이기택

대법관김재형